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5. 13) 상정
-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5. 13) 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과장 김 영 국)

가. 제안이유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준공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여 개원·입주하게 됨에 따라,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 법문장의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설립 목적, 용어의 정리, 적용범위, 진흥원의 설립, 관할시설의 범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부터 제6조까지)
- 진흥원의 정관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 진흥원의 운영재원 및 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진흥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만
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
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시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허가·위탁 및 물품의 관리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 진흥원의 회계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르도록 함.(안 제14조)
- 진흥원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
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
록 규정함.(안 제16조)
- 시장은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3호
의결년월일	2009. 5. 21. (제152회)

제출년월일 : 2009. 5.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준공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여 개원·입주하게 됨에 따라,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 법문장의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설립 목적, 용어의 정리, 적용범위, 진흥원의 설립, 관할시설의 범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나. 진흥원의 정관 및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다. 진흥원의 운영재원 및 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진흥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만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시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허가·위탁 및 물품의 관리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바. 진흥원의 회계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르도록 함.(안 제14조)

사. 진흥원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자. 시장은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첨 부:**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한국만화문화의 창달과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만화계와 함께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문화”란 만화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구현된 삶의 총체로 다양성과 고유성에 기반한 인간의 정신활동과 그것을 최우선 가치로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2. “만화산업”이란 만화를 수단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활동의 총칭으로 다양한 매체들과 융합에 따라 생산·유통·소비되는 연관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만화 작품의 기획·창작·제작·유통 및 소비와 관련된 산업
 - 나. 만화 작품을 원천으로 한 영화·드라마·뮤지컬·캐릭터 등의 저작권 관련 산업과 애니메이션·게임·광고 등의 뉴미디어 영상 제작

분야와 관련된 산업

3. “만화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만화원화, 만화도서, 일러스트레이션, 만화속 명장면 등 만화 이미지를 체화하여 제작된 유형·무형의 재화(디지털 및 멀티미디어 만화 콘텐츠를 포함한다)

나. 만화 캐릭터를 활용한 완구·문구·팬시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

4.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7-2번지에 소재한 사유재산을 말한다.

5. “국제만화가대회”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각국 만화가들의 친선·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 존중 및 만화를 통하여 환경·교육·인권 등 인류평화와 복리에 기여하고자 1996년 출범한 만화가 중심의 국제민간기구를 말한다.

6. “부천국제만화축제”란 만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산업전 성격의 전문 만화축제로, 만화가 갖고 있는 오락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작가와 국내외 출판사가 상호 교류하는 비즈니스의 장이자 한국만화의 대표 축제를 말한다.

7. “만화규장각”이란 국내외 만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만화종합 아카이브로써 한국만화박물관·한국만화도서관 등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를 총칭하며,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만화와 관련된 만화도서·이론서·원화·영상물·캐릭터 및 소장품

등 물리적 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열람 서비스 제공

나. 만화관련 비물리적 자료(만화종합 데이터베이스)의 수집 보존 및 인터넷 열람 서비스 제공

8. “만화비즈니스센터”란 만화산업의 활동과 관계되는 만화작가, 만화 관련 업체·단체·기관, 연구·교육시설 등을 집적화하여 만화의 창작, 비즈니스, 교육, 연구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진흥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관할시설의 구분)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할한다.

1. 만화규장각(한국만화박물관·한국만화도서관·상영관)
2. 만화비즈니스센터
3.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제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 및 관리
2. 만화규장각 운영 및 관리
3. 만화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
4.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5. 국제만화가대회 사무국 운영
6. 부천국제만화축제 개최
7. 만화문화의 해외 교류 및 수출 지원사업

8. 만화작가 및 만화산업 관련 업체의 유치 육성
9. 만화산업 및 만화상품 관련 기획·창작·제작·유통 지원사업
10. 만화 및 만화산업 분야 전문 투자조합 결성 운용
11. 만화문화의 저변 확산 및 만화 관련 전문 인력 양성
12. 만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의 수익사업
13. 그 밖의 만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이사회 구성)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운영재원) ①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도비 지원금,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진흥원의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금)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만화문화의 창달과 만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 전환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허가·위탁 및 물품의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

② 만화비즈니스센터 및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만화작가, 업체 또는 지원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연간 사용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4조(회계운용) 진흥원의 회계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운영은 진흥

원의 법인 변경등기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명의 및 사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문서, 공부 등에 사용된 부천만화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의 명의를 이를 진흥원의 명의로 보며, 센터의 모든 사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현행 조례)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998. 11. 16 조례 제1610호

개정 1999. 07. 29 조례 제1661호

개정 2000. 05. 24 조례 제1751호

개정 2005. 11. 11 조례 제21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만화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이하 “만화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만화정보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32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① 만화정보센터를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1.11〉

② 만화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국내외 만화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제공
2.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이벤트 기획 실행
3. 국내 만화인들 간의 상호교류 촉진
4. 만화지망생들의 교육 및 친숙한 만화문화 육성
5. 만화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
6. 사이버만화도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7. 캐릭터 및 문화상품 개발
8. 기타 만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전문개정 2000. 05. 24〉

제4조(지원) 시장은 만화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 또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 05. 24〉

제5조(사업계획등 보고) 법인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5. 24〉

제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법인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05. 24〉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05. 24〉 <개정 2005.11.11〉

제8조(업무지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05.24>

제9조(민법 및 타법령의 준용) 법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05.24> <전문개정 2005.11.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 11. 16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7. 29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5. 24 조례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천만화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은 사단법인 등기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11. 11 조례 제21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운영은 재단법인 설립 등기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